

주간 규제 정보

Vol. 331

2021. 01. 25 ~ 2021. 01. 31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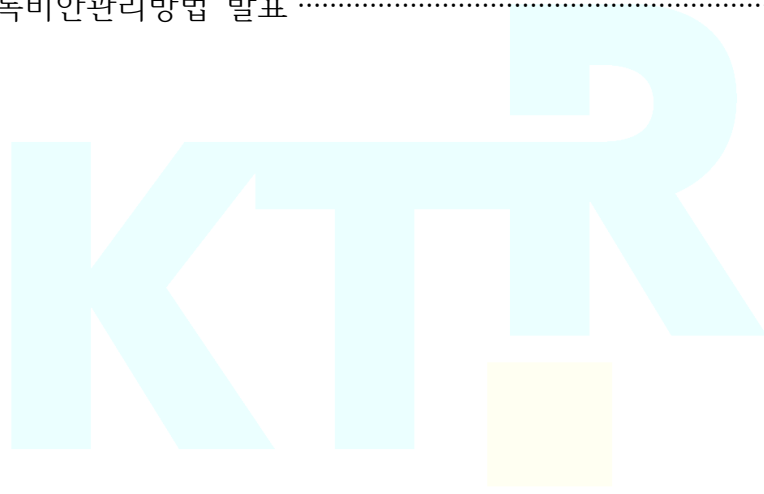
1.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3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4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썬기준 개선 5
4. 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6
5.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 원료로 확대됩니다 7
6.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기준.절차 마련 8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코트디부아르 에어컨시장 동향 및 시사점 10
8.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 폭증한 태국 고무장갑 시장 동향 16
9. 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인도 통관 절차 23
10. 中 화장품 등록비안관리방법 발표 2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 기업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로 작년에 19건의 기업애로 발굴, 올해부터 본격 개선 -
-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1월 27일(수)에「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표원은 총리 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기대한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하여 19건의 애로를 발굴하였고,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개선과제 발굴 건수 : ('16) 10건 → ('17) 11건 → ('18) 15건 → ('19) 13건 → ('20) 19건

‘20년에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며,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이 기대된다.

(기술기준 불합리)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촉진

(인증비용·절차 부담)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소요기간 단축

(규제정보 혼란)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 기여

한편, 국표원은 ‘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표원은 ‘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그 간의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한다.

*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기술기준의 종합 점검이 필요한 품목, 관련 국제표준 및 해외기준이 대폭 개정된 품목, 복합·반복적인 기술기준 민원 발생 품목 등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 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2.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 - 0027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의 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감열지) 안전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취지

감열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제정내용

- 감열지에 적용되는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붙임 1.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일부개정안 및 신규조문대비표

2. 안전기준 부속서 25(감열지) 제정안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1. 3. 30(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팩스 : 043-870-5455/043-870-5677

○ 이메일 : consumer1@korea.kr

출처([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3. 축산물 영업자 공동사용 시설 확대 및 축산물 해썬기준 개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1월 25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축산물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해썬(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 >

- 주요 내용은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 등입니다.
-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합니다.
-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 축산물 해썬(HACCP) 제도 개선 >

- 주요 내용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해썬 인증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입니다.
- 축산물 해썬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도록 간소화 합니다.
-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개선합니다.
-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https://www.mfds.go.kr/))

4. 국민 안심 위한 수입식품 유통안전관리 강화

- 「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수립·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2021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무신고 제품 등 수입식품 유통관리입니다.
 - **(수입식품 영업자 지도·점검 강화)** 그간 행정처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식품판매업소**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 *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현장 점검 외에 비대면 점검 병행 실시
 - ** 외국식품판매업소 : 개인휴대반입품 등 무신고(무표시) 제품 유통 점검
 - **(유통 수입식품 수거·검사 확대)**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및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 등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기호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기능성분 검사도 실시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 어린이기호식품 : 과자류, 초콜릿류, 탄산음료
 - ** 건강기능식품 : EPA / DHA 함유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단백질, 프로폴리스 등
 -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검사)** 특정기능(성기능·다이어트 등) 표방 제품 및 영유아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확대실시하고, 검사결과 유해제품은 수입통관단계에서 차단하겠습니다.
 -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정보(위해제품 목록 및성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구축하겠습니다.
 - *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포털에서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제공 중
 - **(무신고 수입식품 등 유통안전관리 강화)** 무신고 식품용 기구·용기가 유통되지 않도록 기획점검과 수입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안전관리 및 영업자 교육 등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국민에게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5. 천연·유기농 화장품인증, 원료로 확대됩니다

- 천연·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 및 인증 확대 기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19년도부터 운영해온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완제 화장품에만 천연·유기농 인증을 해주던 것을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확대는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 과정에서 개별 원료에 대한 자료 구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승인된 원료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하도록 마련했습니다.
- *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현황('20.12 기준) : 16개 업체, 34품목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을 위해서는 화장품 원료를 제조·가공하거나 취급(제조업자 포함)하는 자가 원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승인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천연·유기농 함량 비율정보를 확인 후 승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총 3개소 지정, '21.1월 기준)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 각 인증기관은 승인한 원료 목록을 취합·공개*해 화장품 업체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 3개 인증기관이 승인한 원료 정보를 취합하여, 각 인증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한 목록정보를 제공
- 식약처는 천연·유기농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율승인을 통해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화장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현황 및 원료승인절차

-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 현황 및 원료승인 관련 문의처

기관명	홈페이지 / 연락처(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www.ktr.or.kr 연락처: 02-2164-1405, 1406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www.kcl.re.kr 연락처: 02-3415-8878, 8812
(주)컨트롤유니온코리아	www.controlunion.co.kr 연락처: 070-5121-4577

○ 천연·유기농 원료 승인 절차

1	승인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주체) 화장품 원료 제조·과공업자, 화장품 원료 취급자 등 (제출자료) 신청서, 제조공정도, MSDS 및 원료사용질 문서 또는 유기농 인증서, COSMOS 승인서 등 	별도 서식
2	신청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후 접수 	
3	심사	<p style="text-align: center;">< 적정여부 판단은 원제 화장품 절차 준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서심사 현장평가(필요시) 	
4	심사결과 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승인서를 발급 	별도 서식
	변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의 변경(성분, 원료 배합비율, 공정변경 등) 사업장의 변경(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 등) 승인 사업자의 명칭 변경 등 	별도 서식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6.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 기준·절차 마련

- 인증절차, 신청 제출자료, 심사항목 등을 담은 민원인안내서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을 인증하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는 의료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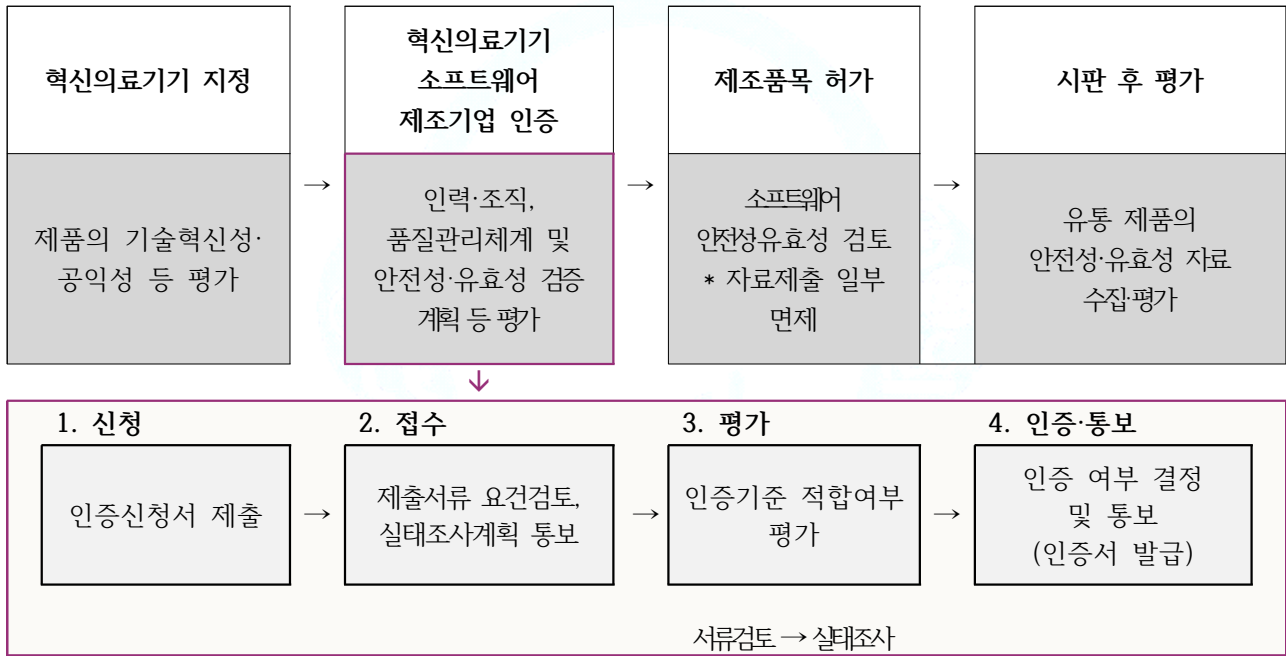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체의 연구개발 인력, 조직 및 품질관리체계 등을 평가하여 우수 제조기업을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제출자료 일부를 면제하는 등 신속제품화를 위한 허가 특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 중 단독으로 개발·제조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 식약처는 의료기기 업체들이 이 인증 제도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 인증 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안내**」(민원인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안내서 주요 내용은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에 필요한 ▲인증절차 ▲인증 신청 시 제출자료 ▲인증 세부 심사항목 등입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의 안전관리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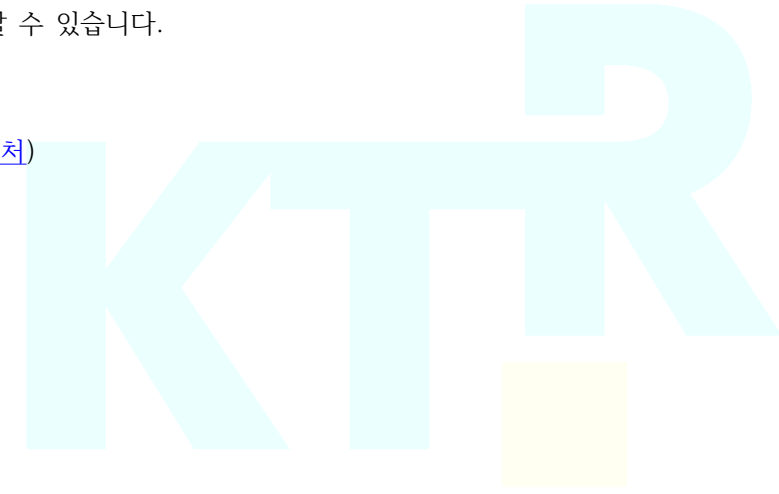


- 세부 심사항목은 ①연구·개발 인력 ②연구·개발 조직 ③연구·개발(실적) ④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에 대한 해당 기업의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 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7. 코트디부아르 에어컨시장 동향 및 시사점

- 경제 성장 및 건설경기 호황에 따라 에어컨 수요 증가세 -
- 수입산 의존도가 높은 시장으로 품질 및 가격경쟁력으로 공략 필요 -

기후, 경제성장, 에너지 가격 축소, 건설 수요 증가 등으로 에어컨 수요 확대

코트디부아르에서 냉방은 필수이다. 1년 내내 고온 다습한 기후로 상시 냉방이 일상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COVID19 확산 전인 2019년까지 최근 5~6년간 7% 후반대를 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가계 수입 확대에 에어컨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전력생산 여건이 나아져 전기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고 전기요금 역시 낮아지면서 고전력 소비 제품인 에어컨을 사용하기에는 좀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다. 또한 상업용 빌딩은 물론 주택 등 건설 경기가 호조를 띄면서 자연스럽게 에어컨 수요가 확산되는데 기여하였다.

중국산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한국산 수입은 10위권 안

코트디부아르 에어컨 및 관련 부품시장은 자국 내 제조업체가 없어 수입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입 통계가 시장 규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2019년 수입 규모는 2,000만 달러 선으로 전년 대비 33.6%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이 중 중국이 점유율 50% 가량을 차지하며 다른 경쟁국을 여유 있게 앞서면서 1위에 포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태국 등의 뒤를 잇고 있다. 한국산의 경우 2019년에 40만 달러에 살짝 못 미치는 수입을 기록, 9위에 랭크되어 있다. 절대적인 수입금액은 높지 않으나 삼성, LG와 같은 유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꽤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7~2019년 코트디부아르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수입 동향(HS코드 8415)
(단위 : 천 달러, %)

HS code 8415(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en Fan And Elements For Changing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Parts Thereof)					
순위	국가	2017	2018	2019	19/18 증감율
	합계	12,290	15,031	20,084	33.6
1	중국	6,250	6,475	9,913	53.1
2	프랑스	1,233	2,484	2,912	17.2
3	이탈리아	540	1,163	1,691	45.4
4	스페인	795	823	1,161	41.0
5	태국	331	309	609	96.6
6	체코	305	417	549	31.6
7	벨기에	353	620	477	-22.9
8	인도	202	331	466	40.8
9	한국	443	131	378	188.5
10	아일랜드	41	1	250	23,162.4

자료 : Global Trade Atlas

에어컨 본체 및 관련 부품 등의 연도별 수입 현황을 세부 HS코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코트디부아르의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는 벽걸이형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건물용 에어컨, 특히 천장에 설치하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사무용/상업용빌딩/건물건축수요가 높아지면서 향후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품목군별수입현황
(단위 : 천달러, %)

순위	HS 코드	세부 제품군	2017	2018	2019	19/18 증감율
	8415	Air Conditioning Machines, Comprising A Motor-Driven Fan and parts	12,290	15,031	20,084	33.6
1	841510	Air Conditioning Machines, Window Or Wall Types	7,072	7,709	11,820	53.3
2	841590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2,020	2,443	3,291	34.7
3	841582	Air Conditioning Machines ,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and part	2,034	2,362	2,031	-14.0
4	841583	Air Conditioning Machines, Not Incorporating A Refrigerating Unit	443	1,074	1,385	29.0
5	841581	Air Conditioning Machines, Incorporating The Cooling/Heat Cycle	532	1,344	1,382	2.8
6	841520	Automotive Air Conditioners	187	97	172	77.5

자료 : Global Trade Atlas

한국 제품, 현지 시장에서 고품질 고가 제품으로 분류

현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유통 중인 제품 중 한국산은 상대적으로 높은 품질의 고가 제품으로 인식된다. 주로 임대료가 높은 상업용 빌딩 혹은 주택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보통 수준의 건물/주택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나 현지에서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브랜드/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LG, 삼성, 월풀(Whirlpool), 하이센스(Hisense), 캐리어(Carrier), 나스코(Nasco), 스파트(Smart) 등이 꼽힌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과 브랜드, 가격 수준을 일반(벽걸이) 에어컨 및 시스템 에어컨으로 분류하면 아래 표와 같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현지 유통 주요 에어컨 제품 현황(벽걸이형)
(단위 : \$)

제품 사진	브랜드/사양	가격대(USD)
	SAMSUNG Samsung Split Wall 2Cv Vivace - R-22 - White	1005
	ILUX Ilux Split Wall - 1 HP - Quiet Cooling - White Cooling capacity: 9000btu/h	219
	KENZO Kenzo Split Eco Anti-Corrosion And Purifier - 1.5HP - STK-12 / POLAR R22 - White Cooling capacity: 12000 BTU / h	222
	NASCO Nasco Split Crystal Anticorrosion - 1 Cv - R410 - 9000BTU Cooling capacity: 9000btu / h	242
	SMART SMART TECHNOLOGY Split Inverter Anti Corrosion And Purifier 1.5 CV - STS-12 / Smarty R410 - White Cooling capacity: 12000 BTU / h	452
	HISENSE Hisense Split 2CV - 18000 BTU - R-410 - Anti Corrosion	467
	MIDEA Midea Split Inverter 3Cv - Front - White	838
	GREE Gree Split Eco Anti Corrosion And Purifier1CV - GWC09AAA - R22 - White / Gray	227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정보, jumia.ci

주로 건물 천장에 빌트인으로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아직 보급률이 높지 않으나 고가의 주택/빌딩, 호텔 및 레지던스, 쇼핑몰 등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지 유통 주요 에어컨 제품 현황(시스템 에어컨)

(단위 : \$)

제품사진	브랜드/사양	가격대(USD)
	MIDEA Midea Split K7 1.5CV - MCA3-12HRN1 - R-410 - White	781
	SAMSUNG Samsung Split Outdoor Unit - K7 R-410 Inverter 600x600 - 3Cv Cooling: 17 - 32 ℃	781
	NASCO Nasco Split Cassette 3CV R-410 Inverter-NAS-M24K7V1	1015

자료 : 해당 기업 홈페이지, jumia.ci

에너지 절전 등 친환경 제품 수입 장려를 위해 규제 적용

에어컨 관련 제품의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각각 5~20%, 18%가 적용된다.

세부 제품별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 현황

(단위 : %)

HS 코드	제품군	관세	VAT
8415101000	Machines and apparatus for air conditioning ... wall or window, ... "split-system" ... not assembled for the assembly industry	5	18
8415109000	Machines and apparatus for air conditioning ... wall or window, ... "split-system" ... not assembled for the assembly industry	20	18
8415810000	Other machines and apparatus for air conditioning with refrigeration device and thermal cycle reversing valve (..	20	18

자료 : 코트디부아르 세관

2020년 11월, 관련 제품 주무 부처인 석유신재생에너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 냉동고, 냉장고 등의 제품의 경우 에너지 효율 등을 표기한 라벨이 없는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부터는 일부 제품군을 대상으로 신제품 판매만을 허가하고 중고제품 판매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중고제품 수요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예정대로 해당 지침 적용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업계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12KW 미만의 가정용/주택용 에어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판매되는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라벨 예시 및 항목별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에너지 효율성 라벨 및 기재 정보 내역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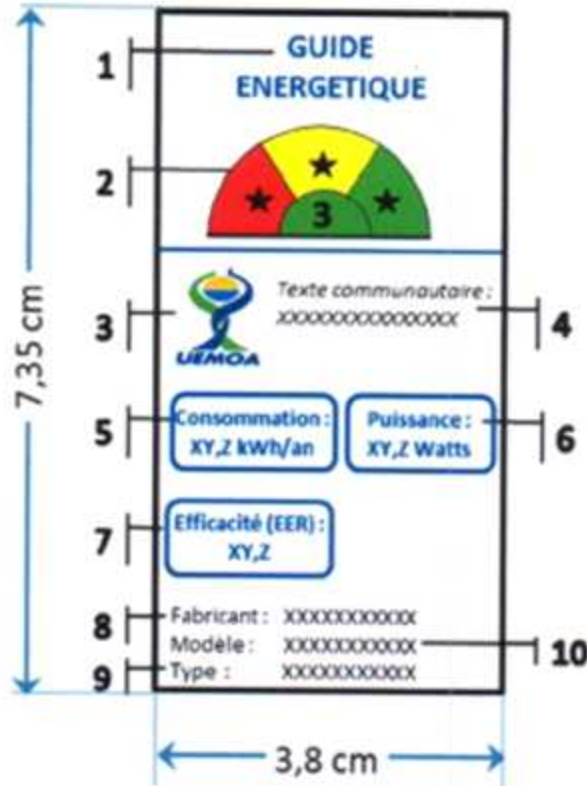


Figure 3 Modèle standard étiquette climatiseur

1. 에너지가이드(GUIDE ENERGETIQUE)라는라벨명표기
2. 에너지효율등급(CEE : Classe d'efficacité énergét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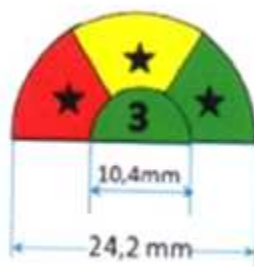


Figure 9 Classes d'efficacité énergétique (CEE)

3. UEMOA(서아프리카경제화폐공동체) 로고



Figure 8 Logo de l'UEMOA

4. 에너지라벨관련 UEMOA 지침표기

Texte communautaire :
XXXXXXXXXXXXXXXXXX

Figure 14 Directive de l'UEMOA

5. 연간전력소비량(Kwh/연)

Consommation
XY,Z
kWh/1000 h

Figure 15 Consommation énergétique

6. 정격전력량

Puissance
XY,Z Watts

Figure 17 Puissance électrique absorbée

7. 에너지효율(EER)

Efficacité (EER)
XY,Z

Figure 21 EER Taux de rendement énergétique d'un climatiseur

8. 제조업체명

9. 제품사양

10. 모델명

한국산은 좋은 품질의 제품, 가격경쟁력이 관건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현지 바이어나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편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로 인식되고 있어 좀더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현지 선호도가 현 수준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경쟁력 강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구매력이 충분하여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 순위를 두는 중상류층을 타겟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빌딩 건설사에 납품하는 현지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시장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 Fraternite Matin 등 현지 언론, Abidjan.net 등 현지 매체, JUMIA CI, 코트디부아르 세관, 코트디부아르 석유신재생에너지부, 관련 업체 홈페이지,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8.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요 폭증한 태국 고무장갑 시장 동향

- 태국은 세계 2위 규모의 고무장갑 수출국 -
-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승인 니트릴 장갑 제조사는 20개 수준 -
- 니트릴 장갑 수출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 많아 각별히 주의 필요 -

태국의 연간 고무장갑 생산량은 약 460억 장 수준이며, 전체 생산량의 약 88%가 의료용에 해당한다. 또한 태국에서 생산되는 고무장갑의 약 90%는 수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과용 장갑 수요가 급증하면서 니트릴 장갑 수출 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태국 고무장갑 생산 현황

태국 내 연간 고무장갑 생산량은 약 460억 장 수준이다. 종류별로 크게 의료용, 산업용, 가정용 3종류가 생산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약 88%가 의료용이다.

태국 산업경제실 통계에 의하면, 태국의 고무장갑과 진찰용 장갑 생산은 수년간 증가세에 있다. 원자재에 해당하는 농축 라텍스 공급 과잉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생산 증대를 낳아 2018년 고무장갑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237억 장을 기록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첫 11개월간 태국 고무장갑 생산량이 243억 장에 달해 2018년 수치를 경신했다.

태국 고무장갑 및 진찰용 장갑 연 생산량(2016~2020년)
(단위: 백만 장, %)



자료: 산업경제실(OIE)(2021.1.19.)

태국고무공사(Rubber Authority of Thailand)에 따르면, 2021년 1월 기준 태국 내 47개의 고무장갑 제조사에서 55개의 생산시설(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0개는 태국 식약청(Thai FDA)의 의료기기 인증 기업으로 진찰용 및 외과용 장갑(니트릴 장갑) 제조사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제조사 중 절반 이상은 태국

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작회사(JV)에 해당한다.

KOTRA 방콕 무역관에서 2020년 7월 태국 내 니트릴 장갑 제조사 8개에 신규 주문량 납품 가능 시기를 문의한 결과 빨라야 2021년 1~8월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2021년 1월, 4개 제조업체에 납품 가능 시기를 재확인한 결과 2개의 업체는 2022년 1월에야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2개사는 기존 물량 처리가 밀려 일시적으로 신규 주문을 받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태국 식약청의 의료기기 승인을 획득한 니트릴 장갑 제조업체 정보

기업명(브랜드 명)	설립연도	수출 여부	웹사이트
SRI TRANG GLOVES(THAILAND) PUBLIC COMPANY LIMITED (Sri Trang Gloves, I'm Glove, Satory, Finnx)	1989	○	https://www.sritranggloves.com/
MERCATOR MEDICAL(THAILAND) LTD. (mCare)	2003	○	http://www.mercator.co.th/
HYCARE INTERNATIONAL CO., LTD. (Hycare)	1993	○	https://www.hycare-int.com/
W.A. RUBBER MATE COMPANY LIMITED (Feel Gloves)	1998	○	http://warubbermate.co.th/
HI-CARE THAI GLOVES CO.,LTD. (Palm Care)	2013	○	http://www.hicarethai.com/
SHUN THAI RUBBER GLOVES INDUSTRY PUBLIC COMPANY LIMITED (Royal Guard, Pure Glove)	1988	○	http://www.shunthaiglove.com/
PHOENIX RUBBER PRODUCTS COMPANY LIMITED (Prosafe, ULP, Progen, Crystal, Proxam)	2006	○	https://www.thairubberglove.com/
INNOVATIVE GLOVES CO., LTD. (Black Anaconda Nitrile Grip, Orange Gripper, Falcon Grip, Ultimate Grip, Food Buddy, Black Barrier, Nitri-hand, Avi Nitri-SkinPro, Innovative Super Blue, High Risk, Black Beauty)	1999	○	https://www.innovativegloves.net/

자료: 사업개발국, 각 사 홈페이지

고무장갑 수요 동향

태국고무장갑제조협회(TRGMA)는 2020년 12월, 2020년 글로벌 고무장갑 수요는 팬데믹으로 인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3600억 장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국 산업경제실(OIE)의 통계를 살펴보면 태국 내 고무 장갑 수요는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첫 11개월 간 고무장갑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1.5% 증가했으며, 총 수요의 91.4%가 수출 물량에 해당했다.

태국 고무장갑 판매량(2016~2020.11.)

(단위: 백만 장)



자료: 산업경제실(OIE)(2021.1.19)

월별 고무장갑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0년 중 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의 판매가 2019년, 2018년 대비 증가했고, 5월 판매량이 39억 장으로 절정에 달한 뒤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태국 월별(1~11월 기준) 장갑 판매량(2018~2020년)

(단위: 백만 장)



자료: 산업경제실(OIE)(2021.1.19.)

고무 장갑 관련 정부 정책

태국 투자청(BOI)은 의료기기 및 장비 생산 투자청 승인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비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의료기기 제조 시 프로젝트에 따라 3~8년간의 법인세 면제와 기계류 수입관세 면제,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2020년 4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관련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하자 한시적으로 기존 인센티브에 추가로 3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2020년 1~6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함). 태국 투자청은 2020년 상반기 중 42건의 의료기기 생산 관련 투자 승인을 했으며, 승인 기업들의 총 투자액은 120억 바트(4억 35만 달러) 수준이다.

태국 내각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태국고무공사를 통한 고무제품 제조기업들의 대출 이자금 보조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고무제품 제조 기업들이 제조시설 확장 또는 관련 기계설비 교체 관련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2020년 1월~2021년 12월 태국고무공사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정부에서 2016에서 2026년까지 연 3%까지 대출금 이자를 상환해 준다. 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한 예산 250억 바트(8억3406만 달러)을 배정함으로써 라텍스 초과공급량을 연 10만 톤 수준까지 흡수하려 하고 있다.

고무장갑 제조 관련 최신 투자 동향

현재 대부분의 태국 고무 장갑 제조사들은 폭증하는 공급물량을 감당할 생산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일부 제조사들은 생산시설 확장을 계획 중이다. 태국 고무장갑 제조 선도업체인 쓰리 프랑 글러브스(Sri Trang Gloves PCL)사의 경우 지난 9월 증설, 생산효율성 향상 그리고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240억 바트(8억 69만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동사는 2021년 중 생산 가동을 목표로 4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 중이며, 장차 4개 공장의 합산 연 생산능력은 160억 개에 달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인 닥터 부(Doctor Boo) 사의 경우 12억 바트(4003만 달러)을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3개의 공장을 추가로 설립할 예정이다.

또한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톤부리 헬스케어 그룹(Thonburi Healthcare Group PCL)은 타이 메디컬 글러브(Thai Medical Glove Co., Ltd.)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장갑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 타이 메디컬 글러브는 10억 바트(3340만 달러)을 투자해 1일 100만 장의 의료용 장갑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국의 고무장갑 수출 현황

태국고무장갑제조협회(TRGMA; Thai Rubber Glove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태국은 말레이시아에 이은 세계 2위의 고무장갑 수출국이다. 태국의 글로벌 시장 내 고무장갑 시장점유율은 약 15% 수준이며, 전체 고무장갑 생산량의 약 90%가 수출용에 해당한다.

태국은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외과용·의료용 장갑(HS 4015.11)을 수출하고 있으며, 2020년 1~11월 수출액은 2억605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최대 수출국은 전체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이며, 대 한국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7.3% 증가한 337만 달러를 기록했다.

태국의 외과용·의료용 장갑(HS 4015.11) 수출현황(2018~2020년, 1~11월)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1~11월 기준)			비중			증감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263,702	249,130	260,529	100.0	100.0	100.0	4.6
1	미국	172,317	178,495	156,366	65.4	71.7	60.0	-12.4
2	네덜란드	41,832	44,485	44,847	15.9	17.9	17.2	0.8
3	터키	184		9,955	0.1	-	3.8	-
4	일본	12,365	8,557	9,425	4.7	3.4	3.6	10.1
5	우크라이나	1,350	1,178	6,774	0.5	0.5	2.6	474.7
6	호주	8,785	2,071	5,712	3.3	0.8	2.2	175.8
7	대만	3,372	3,345	4,901	1.3	1.3	1.9	46.5
8	캐나다	4,290	3,023	4,295	1.6	1.2	1.7	42.1
9	한국	2,993	2,289	3,373	1.1	0.9	1.3	47.3
10	이탈리아	2,226	1,016	1,915	0.8	0.4	0.7	88.4

자료: Global Trade Atlas(2021.1.20)

2020년 1~11월 기준 태국의 외과용·의료용을 제외한 고무장갑(HS 4015.19)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17억4726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국은 미국이며, 대영국 수출은 1058.5% 증가했다. 한국으로의 수출은 63.0% 증가했으며, 수출규모는 2297만 달러로 16위를 차지했다.

태국의 고무장갑(HS 4015.19*) 수출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금액(1~11월 기준)			비중			증감률 20/19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세계	815,449	850,408	1,747,264	100.0	100.0	100.0	105.5
1	미국	325,627	337,519	620,292	39.9	39.7	35.5	83.8
2	영국	12,332	12,750	147,716	1.5	1.5	8.5	1,058.5
3	일본	55,785	56,014	103,205	6.8	6.6	5.9	84.3
4	중국	36,156	45,728	102,742	4.4	5.4	5.9	124.7
5	독일	58,677	54,296	95,270	7.2	6.4	5.5	75.5
6	브라질	16,335	24,761	52,438	2.0	2.9	3.0	111.8
7	네덜란드	21,558	22,645	44,114	2.6	2.7	2.5	94.8
8	이스라엘	20,494	20,353	41,725	2.5	2.4	2.4	105.0
9	벨기에	39,196	37,985	40,348	4.8	4.5	2.3	6.2
10	인도	13,426	14,919	32,582	1.7	1.8	1.9	118.3
16	한국	15,245	14,092	22,970	1.9	1.7	1.3	63.0

주: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 기타제품(외과용 및 의료용 제외)

자료: Global Trade Atlas(2021.1.20)

의료용 장갑 인증 정보

태국에서 의료용 또는 외과용 장갑(HS 4015.11)은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제품 제조 및 수입에 앞서 태국 식약청(Thai FDA)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론 제품 수입 및 유통 전 식약청을 통한 제품 사전 등록 절차도 필요하다.

현재 태국 식약청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기 부족현상에 대응하고자 의료용 장갑을 포함한 13개의 코로나 진단, 치료, 예방 관련 품목을 패스트트랙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수입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1일(근무일 기준)안에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의료용 장갑 인증 정보

구분	필요서류
신청처	1) 온라인: 태국 식약청 온라인 서류 제출(e-submission) 플랫폼인 SKYNET * 온라인 제출 권장 2) 오프라인: 식약청 원스톱서비스센터(OSSC)
수수료	1) 신청수수료: 건당 100บาท 2) 수입허가서 발급 수수료: 1,000บาท(10개 품목 이하), 2,000บาท(10개 품목 초과시)
인증 소요기간	1근무일
필요서류	1) 6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등록증 사본 2) 공식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입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사본에 원본확인 필수) 3) 자유판매증명서(CFS) * 단, 의료기기 패스트트랙 운영기간 중 확인서(Letter of Conformity) 제출로 같음 4) 품질증명서 원본(ISO 13485 또는 GMP) 5) 제품 카탈로그 등 기타 증빙 서류

자료: 태국 식약청

우리 기업들은 태국의 니트릴 장갑 수출 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니트릴 장갑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면서 니트릴 장갑 제조업체 또는 수출 대행업체를 사칭한 사기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작년 9월 태국 여성 1인과 아프리카 남성 2명이 182만 달러 상당의 니트릴 장갑 사기 건으로 체포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으며, 방콕무역관을 통하여 니트릴 장갑 관련 우리기업의 피해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실존하지 않은 허구의 기업 정보를 웹사이트 상에 게재한 뒤 수출 알선을 하거나 실존 회사명 또는 장갑 브랜드를 도용하여 별개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사기를 행하기도 한다. 또한 태국 식약청 의료기기 제품 인증 서류를 위조한 경우도 발생했으며, 발주 물량 중 일부만을 하자 제품과 섞어서 선적하고 향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2021년 1월 현재 태국 니트릴 장갑 제조업체 중 신규 발주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으므로 우리기업들은 웹사이트 또는 기타 경로를 통하여 태국산 니트릴 장갑 수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입수할 경우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업체의 웹사이트에 게재된 니트릴 장갑 사기 주의 경고문 예시

WARNING

As the demand for gloves continues to increase globally, please be on guard for opportunistic scammers.

BE ALERT WHEN SCAMMER IS CLAIMING TO

- 1 Have connection with W.A. Rubbermate Co., Ltd or pretending to be W.A. Rubbermate Co., Ltd's export distributor
- 2 Claim to sell W.A. branded gloves and collect deposit in advance, offering only EXW warehouse delivery terms
- 3 Using fake W.A. Rubbermate certificates, or using the W.A. certificates without authorization.
- 4 Claim that products are produced by W.A. Rubbermate or selling fake W.A. Brand

SCAM ALERT

W.A. RUBBERMATE CO., LTD
have **ZERO BUSINESS DEALINGS**
with the following entities:

ONCEALL
KIMBERLY GLOVE
SKYMED
LISHI GROUP CO., LTD
SINGHA KIMBER
SINGHASENI GROUP CO., LTD
VOW ASIA
D-LIGHT
365 INTER GLOVES
AKARA SAFETOUGH

**NO ONE HAS A
SUPPLY CONTRACT**

We DO NOT AUTHORIZE any companies in Thailand to represent us in the exportation of our products.
All export sales are directly handled in house by our W.A. RUBBERMATE CO., LTD export department.

WA W.A. RUBBERMATE CO., LTD

www.warubbermate.co.th

자료: W.A. Rubbermate 사 웹사이트

SHUN THAI

WARNING Fraud

***** Please be warn of fraud *****

Please note that we do not have any authorized agents. And be warn of fraud! People trying to gain advance deposit money or to deliver counterfeit products, and trying sell under our FDA, CE Certificates. We will only supply factory direct and we will not be responsible for any losses arises from sales contracts undertaken with 3rd parties.

Please direct all enquiry to mk@shunthaiglove.com Tel. 02-5116040, 02-5116046

Also please be warned! We are not connected in any way with;

- SoonRuamkraupan 2000 Co., Ltd.
- ALPHA CHANAN INTER777 CO., LTD.
- Carry Chain Product Co., Ltd.
- Diamond Star Network Co., Ltd.
- Nakalipbodee Co., Ltd.
- Pure All Co., Ltd.
- Shakti Industries Ltd.
- Sufficiency Economy City Co., Ltd.
- TP RETAIL CO., LTD
- Billion Pro Co., Ltd.
- S Medical And Supply Co., Ltd.
- 24 Clean Energy Co., LTD.
- ANNY Gloves (THAILAND) Co., LTD.
- Tai Fu Lai Company Limited
- A.B.N. International Business Company Limited.
- Anakin Trading Co., Ltd.
- D Media Worldwide Co., Ltd.
- KZB Inc Consultancy PTE Ltd.
- New Look Center Co., Ltd.
- Royal Product Co., Ltd.
- SHI CHIANG EUROPE SARL
- Tigress Trading Co., Ltd.
- GAIA Corporation (Thailand) Ltd.
- Medina & Supply Co., Ltd.
- GTI Intertrade Company Limited
- JDC Corporation Co., Ltd.
- Landmark Intertrade Co., Ltd.

We did not produce OEM for the following brands;

- ALPHA GLOVE
- HIMA
- LISHI
- PURE GLOVE INTER
- Sky Med
- Green Country Gloves
- Kimberly Glove
- Peace Gloves
- SIRAPHAN28
- TP Gloves
- DI-Line
- Emily Gloves
- MEDELLA
- THISUD GLOVES
- Wimax Gloves

자료: Shun Thai Glove 웹사이트

태국산 니트릴장갑 수입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에이전트가 아닌 제조업체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직접 연락을 취할 것이 권장된다. 더불어 본인들이 제조사의 공식 대리점이라고 주장하거나 태국 제조사와 공동 투자를 하고 있어 우선 발주가 가능하다는 식의 권유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제조사를 사칭하는 기업도 있으므로 연락처가 +66(0)8 또는 +66(0)9 로 시작하는 태국 휴대폰 번호만 기재되어 있거나 왓츠앱(Whatsapp) 또는 라인(LINE)계정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특히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시사점

태국고무장갑제조협회(TRGMA)는 2021년에도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지속될 경우 고무장갑 수요가 2020년 대비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잘 해왔던 태국도 2020년 12월부터 집단 감염이 발견된 뒤 매일 세자리 수 수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콕무역관과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S사의 판매부 관계자는 최근 태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당분간 니트릴 내수 수요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국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용 컨테이너 부족을 겪고 있는데다 태국 내 장갑 제조사들 대부분이 기존 발주량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은 태국산 장갑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특히 니트릴 장갑 수입이 가능하다는 정보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니트릴 장갑 수출이 가능한 우리 기업은 태국 식약청의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한 신속한 수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 KOTRA 방콕무역관 김민수, Chanatta Thararos

자료: 현지언론(Bangkok Post, Prachachat, Bangkokbiznews, The Nation), 수출입은행, 태국투자청(BOI), Incentives, 태국플라스틱협회, 태국고무장갑제조사협회, 태국고무공사, 태국식약청, 산업경제실, 니트릴 장갑 제조사 홈페이지, 사업개발국, Global Trade Atlas(HIS Markit) 및 KOTRA 방콕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9. 인도 AEO 제도 활용으로 수월해지는 인도 통관 절차

- 인도의 비관세장벽에 대응, AEO 제도 활용 가능 -
-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중소기업에 대하여 인도 AEO 획득 요건 완화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개요

AEO는 우리 관세법 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의미한다. 동 제도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에 의해 만들어진 민·관 협력제도로 세관 당국에 의해 공인받은 우수 업체에 대하여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등의 편익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AEO 인증업체에 대해서 통관 행정 상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사회 안전,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물품의 반입은 차단하여 국가 간 화물이동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 세계 80개국이 도입하였고, 현재 13개국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관세법 개정을 통해 AEO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관세법 255조의 2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AEO 제도의 현황 및 혜택

인도는 2016년부터 AEO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0년 12월 기준 인도 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T1의 경우 3,206개, T2의 경우 581개, T3의 경우 20개, LO의 경우 791개로 총 4,598개이다. T1, T2, T3는 수출입업체가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이고, LO는 수출입업체 외 물류업체, 운송인, 하역업자 등이 획득할 수 있는 인증 등급을 말한다.

인도 AEO 인증 현황

인증 등급	T1	T2	T3	LO
기업 수	3,206	581	20	791
인증 대상	수입업체 / 수출업체			물류업체 등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AEO등급별주요 혜택 비교

T1	T2	T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시간 단축 - 수출입 항구 간 직접 운송 (DPD, DPE) - 간소화된 절차에 의해 세관, 컨테이너 작업 등 출입 가능 - 은행 보증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50% 감액 -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6-9개월 내 완료 - 관세 관련 분쟁 발생 시 6개월 내 조정 - 통관 후 심사(PCA) 적용 및 2년마다 현장 심사 시행 - 수수료 없이 24시간 수출입신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T1과 동일 - 세관의 정밀 검사 면제 - 컨테이너 검사의 경우 우선 진행 - 수출입신고 평가의 경우 우선 진행 - 수출증명(EGM) 제출 이후 신속한 관세 환급 처리 - 은행 보증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 금액의 75% 감액 - 지정장소 외 별도 작업장에서 소매가격 (MRP) 스티커 부착 가능 - 통관 후 심사(PCA) 적용 및 3년마다 현장 심사 시행 - 세관 내 통관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담당자 지정 - 특수관계자 간 수출입 등록 절차(SVB) 소요 기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T2와 동일 - 원본의 서류가 아닌, 수출입업체가 자체적으로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능 - 은행 보증 제공 의무 면제 - 관세 등 환급신청 시 서류 제출 후 30일 내 처리 완료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AEO 인증 절차 및 필요 서류

인도AEO 인증 종류 중T1의 경우, 신청업체의 이름, 수출입코드(IEC), 부가세 등록 번호(GSTN)등 일반적인 사항과 법규준수 여부와 재무 건전성 등에 대하여 작성한 표를 신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AEO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AEO T1을 제외한 신청 서류는 인도 국제관세총국(DIC, Directorate of International Customs)의AEO 프로그램 담당자 앞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AEO T2와T3의 경우, 신청서와 함께 법규 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AEO T2와 T3 신청 시 필요서류

연번	서류	내용	인증 종류 및 서류 필요 여부	
			T2	T3
1	AEO 신청서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	○
2	안전관리 계획서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문서, 시설과 장비, 교육·훈련체계 관련 시행 내용	○	○
3	업무흐름도	수출입 과정에서 서류 및 정보의 흐름	○	○
4	공장배치도	출입구, 주차 구역, 시설 등 배치도	○	○

5	자체 평가 서	일반 사항	사업 종류, 영업 활동 기간, 수출입신고 건수 등	o	o
6		법규 준수	사기, 위조, 밀수, 세금 회피 등의 행위에 관련 여부	o	o
7		내부통제시스 템	영업활동, 신고 자료의 흐름 및 회계처리 관련	o	o
8		재무 건전성	대차대조표, 사업 지속성 관련 회계 감사 결과 등	o	o
9		안전 관리	운송수단, 출입통제, 인사, 취급절차, 문서, 시설과 장비, 정보 및 교육·훈련체계 관련	o	o
10	거래업체 정보		기본 정보 및 AEO 인증 취득 여부	x	o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AEO T2의 인증 신청자는 AEO 인증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AEO 인증 심사 담당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AEO 인증 심사 담당자는 추가적인 정보 및 문서가 필요한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을 통해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신청 업체는 적절한 기간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신청 업체의 현장 검증을 위한 방문이 진행 된 후, 60일 이내 검증 결과 보고서 및 권고사항이 공지된다. 해당 권고 사항을 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AEO T2 인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AEO T3 인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AEO T2를 2년 이상 유지한 업체인 경우에는 신청 서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AEO T3 인증 취득이 가능하며, AEO T2를 유지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거래업체 정보 관련하여 현장 검증이 이뤄진 후에 AEO T3 인증 여부가 결정된다.

주: [인도 AEO 인증 관련 규정 클릭하기](#)

중소기업 AEO 인증 제도 주요 내용

구분	기존 내용	변경된 내용
요건 완화	이전 회계연도 내 최소 25건의 수출입 통관 처리	이전 회계연도 내 최소 10건의 수출입통관 처리(최근 6개월간 5건 이상)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
	최근 3년간 법규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 성 평가	최근 2년간 법규준수 여부 및 재무건전성 평 가
신청 서류	10개의 신청서류 작성	T1의 경우 2개, T2의 경우 3개의 신청서류 작성
처리 기한	T1의 경우 1개월, T2의 경우 6개월	T1의 경우 15일, T2의 경우 3개월
주요 혜택	AEO미인증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은 행 보증금의 50%(T1), 25%(T2)제공	AEO미인증 업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은행 보 증금의 25%(T1), 10% (T2)제공

자료: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세관 담당자는 수입 물품 통관 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물품 검사나 서류 보완요구 등 다양한 이유로 은행 보증금을 제공하게 한 후, 물품을 반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AEO T1, T2의 경우 각각 50%, 75%의 은행 보증금 감액이 가능하였는데, 이번 중소기업을 위한 AEO T1, T2의 경우 각각 75%, 90% 까지 감액이 되어 더 많은 자금 부담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인도와 다른 국가 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과 관련된 경우에는 AEO 인증에 따른 은행 보증금의 감액이 적용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 AEO 인증업체의 인도 내 활용

2017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과 인도 간 AEO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에 따라 한국의 AEO 인증을 받은 수출업체는 인도 AEO 인증을 받은 업체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을 받기하기 위해서는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가 외국의 AEO 수출 기업에게만 발급해 주는 해외거래처부호(OBIN, 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아 인도에서 수입 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해당 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 AEO 인증 수출업체와 인도 수입자 간 협력이 필요하며, 한국 수출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도 수입자에게 전달하면, 인도 수입자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사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인도는 세관 검사율이 높고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편이다. AEO 인증을 받은 수출입업체는 미인증 업체에 비하여 검사 대상이 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서류의 결함 등으로 인해 은행 보증 제공 후 통관을 해야하는 경우에도, AEO에게는 은행 보증금의 금액이 적용되므로 자금 운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에 수출할 경우, 양국 간 AEO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비관세장벽을 낮출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 19로 인한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 3월 이후 일시적으로 인도로 수출한 물품의 통관이 무기한 연기되고, 체선료,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한국 AEO 인증 수출업체임을 근거로 인도 세관에 우선통관을 요청, 신속히 통관이 진행된 사례도 있다.

최근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에 의해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AEO 인증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지원해주기 위해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 한 AEO 인증 제도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뉴델리 현지 기업 관계자는 기존에 준비하여야 하는 많은 양의 서류 대신 법규 준수 여부 및 안전 관리 관련한 준수사항에 대한 서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간소화된 절차로 AEO 인증업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을 위한 AEO 인증절차를 포함, 인도 AEO 제도 및 양국 간 AEO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인도의 비관세 장벽에 대응하고, 무역거래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한국 관세청, 인도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인도 현지 언론자료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10. 中 화장품 등록비안관리방법 발표

- 2021년 5월 1일부 시행 -

- 중국 최초의 화장품 등록비안에 대한 전문적인 규정으로 등록 및 비안제도를 명확하게 세분화 -

1월 1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화장품등록비안관리 방법>(이하 약칭 <방법>)을 발표하였다. 2021년 5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방법>은 총 6장 63조로 화장품 신원료,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 최초 화장품 등록비안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규제로 지난해 발표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이하 약칭 <조례>)에 대한 보완이다. <방법>은 <조례>의 입법정신과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고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 비안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标 题: 化妆品注册备案管理办法

索 引 号: 2021-1610415769503

文 号: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35号

成文日期: 2021年01月07日

主题分类: 总局规章

所属机构: 法规司

发布日期: 2021年01月12日

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등록비안 발표번호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홈페이지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화장품 등록비안관리방법> : 원문 참조

주요 내용

1) 등록제도 및 비안제도 세분화, 관련 정의 명확화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는 그 위험도에 따라 분류,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등록 또는 비안을 실행한다. 등록은 행정 허가에 속하므로 국가총국이 책임지고 그 절차와 요구는 보다 엄격해진다. 이에 비해 비안은 고지성 비안으로 절차는 간소화되고 경내 책임자의 책임과 사후감독을 강조하였다. 단, 안전기준에는 차이가 없다.

- 등록: 등록인의 신청서에 대해 약품감독관리부문(药品监督管理部门)에서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을 심사해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 비안: 비안인(备案人)은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안전성과 품질 통제 가능성을 밝힐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약품감독관리부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저장하고 비치한다.

2) 감독기관의 등록/비안 실시 권한 명확화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은 특수 화장품, 일반 수입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과 비안 관리를 책임진다. 해당 능력을 갖춘 성, 자치구, 직할시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한 비안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 2018년 88호 공고문의 규정에 근거하면 현재 일반 수입화장품 비안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로는: 텐진, 랴오닝, 상하이, 저장, 푸젠, 허난, 후베이, 광둥, 충칭, 쓰촨, 산시 등 11개 성이 있다. 국내 책임자 등록지가 성(구, 시) 기타 행정구역의 범위 내에 있다면 온라인 비안 시스템에서 자료를 제출한 뒤 국가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비안을 진행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의 화장품기술심사기관(妆品技术审评机构), 행정사항접수서비스기관(行政事项受理服务机构), 심의검사기관(审核查验机构), 불량반응감측가관(不良反应监测机构), 정보관리기관(信息管理机构) 등 전문적인 기술기관은 화장품 등록과 비안 관리에 필요한 등록 접수, 현장 실사, 불량반응 감측, 정보화 시스템 제작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3) 등록인, 비안인의 의무와 책임 명확화

특수 화장품, 고위험성 화장품 신원료의 등록증을 취득한 등록인, 또는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의 비안을 통과한 비안인은 해당인의 명의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고 제품의 전체 생명주기동안 품질 안전과 효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출시 이전에 등록 비안 관리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시 후에는 불량반응에 대해 검측, 평가, 보고, 제품 위험 통제와 리콜, 제품 및 원료의 안전성 재평가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등록인, 비안인이 해외에 있다면 국내에 있는 기업 법인을 경내 책임자로 지정해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4)비안 허가 절차 간소화

'제출 즉시 비안'을 골자로 하는 비안 정책을 실행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비안이 완성되고 비안이 완성되면 생산 및 경영이 가능하다. 다만, 일반化妆품을 수입하는 기업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비안을 거친 일반 수입화장품에 대해 경내책임자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외의 항구를 통해 수입을 희망할 시에는 정보화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항구명 및 수출입통관 진행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 화장품, 고위험성 화장품의 신원료에 대해 등록 관리를 진행하고 각 등록절차의 시효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등록증 연장에 대한 심사 절차에서 <방법>은 심사기한을 기존 업무일 기준 115일에서 업무일 기준 15일로 줄였다. 접수기관은 등록 연장에 관련된 신청을 받은 뒤 업무일 기준 5일 내에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은 접수일부터 업무일 기준 10일내에 신청인에게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새로운 등록증의 효력 발생일은 이전의 등록증의 만료일로부터 연장된다.

화장품 원료 사용 시 주의사항

① 사용 예정인 화장품 원료는“기사용된 화장품 원료 목록”의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기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국내에서 최초로 사용되는 천연 또는 인공 원료는 화장품 신원료에 속하고, 이미 사용된 화장품 원료이지만 사용 목적, 안전 사용량 등을 조절할 경우에도 신원료에 속한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 비안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그 절차는 신원료의 위험 등급에 따라 다르다.

② 부식, 자외선 차단, 착색, 염색, 잡티 제거 및 미백 기능을 가진 화장품 신원료는 등록 관리를 진행해야 하고, 기타 화장품 신원료는 비안 관리를 진행한다.

③ 화장품 신원료는 안전감시감독관리제도에 따라 감시감독기간(보호기간)인 3년동안 신청자만이 해당 신원료를 사용할 수 있고 기타 화장품의 등록인, 비안인은 해당 신원료를 사용할 경우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 비안인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기타 주의사항

① 일반 화장품 출시 또는 수입 전에 비안인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해야 화장품의 사용 및 판매가 가능하다. 비안완료된 일반 수입 화장품이 경내 책임자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외의 행정구역 항구에서 수입될 경우에는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수입 항구 및 수출입통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추가 신고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 ② 비안이 완료된 일반 화장품은 해당 제품의 이름 및 효능, 제품의 조제법을 임의로 수정할수 없다.
- ③ 비안인 및 경내책임자 주소지의 변경으로 해당 등록 관리 부서가 변경되는 경우 비안인은 다시 비안신청을 해야 한다.
- ④ 특수 화장품 생산 또는 수입 이전 신청인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 등록을 해야만 원료 및 화장품의 사용 및 수입이 가능하다.
- ⑤ 등록된 특수 화장품의 주의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이 제품의 안전, 효능에 끼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 비안, 등록변경 신청 또는 신규 등록해야 한다.
- ⑥ 화장품 등록증의 양도는 불가하다. 기업 합병이나 분리 등의 법적 사유로 인해 등록인을 신설기업 또는 기타 조직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등록 변경을 다시 신청해야 하고 이전 등록인의 주체 자격이 취소된다.

시사점

화장품 신원료의 위험등급에 따라 등록제도 및 비안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원료가 화장품에서 응용되는 것을 가속화시키고 관리감독의 중심을 사후 관리감독에 두기 위함이다. 퍼펙트다이어리의 모회사 이셴(逸仙)전자상거래회사의 비안 담당자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방법>은 비안제도의 효율을 높여 방법령 시행 후에는 더욱 많은 신제품이 출시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화장품 기업 또한 제품의 안전과 합법적 유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해당 방법령의 정책기조에 따라 수출전략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자료: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1세기경제보도, 베이완신스퀘, 평파이신문,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